

LH 부산기장 A2블록 신흔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모집공고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청강리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블록 (기장군 기장을 대변로 43)
- 공급대상 : A2블록 신흔희망타운(공공분양) 486세대 중 2세대(전용면적 55㎡ 1세대, 59㎡ 1세대)

- 금회 추가모집은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 청약자격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부산기장A2 부적격자 제외),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하며,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공사준공 완료된 단지로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부산기장지구 A2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총 건설호수 728세대 중 486세대는 신흔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42세대는 장기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 금회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1.29) 및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0.5.19, 2020.12.31, 2021.09.13, 2022.01.07, 2023.05.03)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추가모집은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 청약자격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여부(부산기장 A2블록 부적격 당첨자 제외), 특별공급 기 당첨 여부 등은 물론이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부산기장지구 A2블록 내 신흔희망타운(공공분양) 동호수는 전체 728세대를 대상으로 소셜믹스방식에 따라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486세대) 및 행복주택(242세대)이 혼합되어 무작위 추첨 및 배정되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06.(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공 고	신청접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당첨자 등호개방	계 약체결
'23.9.06(수)	'23.09.15(금) 10:00~16:00	'23.09.25(월) 16:00 개시	'23.10.12(목) 10:00 ~ 16:00	'23.10.24(화) 10:00 ~ 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어플명:LH청약플러스)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추후 안내	LH부산울산지역본부 ※현장계약만 가능

* 계약체결 장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3층) (추후 변동될 수 있고, 변동 시 안내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 당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금 납부 후 납입 당일 계약체결 마감시간(16:00)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무순위이므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별도 가점 적용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당첨동호를 결정합니다.
- 본 단지의 최초 입주지정기간은 '22.8월이며,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의 입주지정기간은 '23.10.24(화)부터 '23.12.22(금)(60일)입니다.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이후 입주하므로 별도 사전점검 및 사전 동호개방은 없습니다.)
- 공고일(2023.09.06) 기준 부산기장 A2블록의 부적격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부산기장 A-2블록 신흔희망타운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팝플렛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팝플렛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 세대들은 해약세대의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WAVERI:Z'이며, 입주예정자 과반수이상의 결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및 제26조의 5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서 아래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신청하여 중복청약을 하거나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겸종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흔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흔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입주가 불가하며 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관련문의 : HUG [주택도시기금] 클센터 1566-9009)

- 본 상품은 분양기가 '23년 총자산 기준(379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본 지구에는 [의무가입](#) 해당사항이 없으며, 모기지 관련 일반 사항은 최초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용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공동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신청자격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부산기장지구 A2블록 728세대 중 신촌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면적 60㎡이하 2세대(205~2105, 208~804)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계) (㎡)	공급 세대수				최고 총수	1층 세대수	최초입주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	합계	기공급 공공분양	금회공급 공공분양	장기임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A2	합 계									728	484	2	242		5	'22.08.				
	055.9900A	55A	확장	55.9900	22.0290	10.7316	41.3796	130.1302	38.7799	106	71	1	34	25	2					
	055.9900B	55B	확장	55.9900	22.0290	10.7316	41.3796	130.1302	38.7799	34	21	0	13	25	-					
	055.9900C	55C	확장	55.9900	22.0290	10.7316	41.3796	130.1302	38.7799	175	117	0	58	25	-					
	059.9900A	59A	확장	59.9900	23.6028	11.4983	44.3359	139.4270	41.5504	356	236	1	119	25	3					
	059.9900B	59B	확장	59.9900	23.6028	11.4983	44.3359	139.4270	41.5504	57	39	0	18	25	-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장기임대(행복주택)은 별도로 공급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팝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었으므로, 확정 공유대지 면적은 위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최고총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총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달라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해당단지의 준공월은 2022년 8월입니다.
-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가격

■ 주택분양가격(계약금 주택가격의 10%,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10%)	입주시		
055.9900A	55A	5층~최상층	기본형	210,040	21,004	134,036	55,000	
059.9900A	59A	5층~최상층	기본형	225,050	22,505	147,545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 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응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응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시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응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신촌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응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촌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 공간선택 안내

※ 준공이 완료되어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금회 공급세대는 모두 기본형(침실2/침실3 분리)으로 시공되었으며 해약세대의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주택형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 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055.9900A			
059.9900A	침실2/침실3 분리	침실2/침실3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 추가선택 품목(1) 안내

※ 준공이 완료되어 추가품목선택 및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팝플릿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공간 선택유형	유형	선택품목	규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단위:천원)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055.9900A (208-804)	기본형	가구	1 침실1 불박이장		2,188	218	1,970	
			2 침실3 불박이장		1,015	101	914	
			4 주방 커튼수납장		845	84	761	김치냉장고 상부장 설치
		바닥재	5 거능성 룸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강마루 제공
	시스템 에어컨	가구	6-1 거실+침실+		3,400	340	3,060	
			6-2 거실+침실1+침실2/침실3(택1)		5,500	550	4,950	
			6-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000	700	6,300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바닥재	5 거능성 룸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강마루 제공
059.9900A (205-2105)	기본형	가구	1 침실1 불박이장		2,188	218	1,970	
			2 침실3 불박이장		1,015	101	914	
			4 주방 커튼수납장		845	84	761	김치냉장고 상부장 설치
		바닥재	5 거능성 룸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강마루 제공
	시스템 에어컨	가구	6-1 거실+침실+		3,400	340	3,060	
			6-2 거실+침실1+침실2/침실3(택1)		5,500	550	4,950	
			6-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000	700	6,300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바닥재	5 거능성 룸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 추가선택품목(2) 안내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실별 구분 가격							납부방식	
주택형	내역	계	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2	거실	주방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055.9900 A	기본공사비(A)	60,328	14,306	3,723	4,192	3,029	8,371	26,708		
	확장공사비(B)	69,695	16,945	4,145	4,664	3,352	9,390	31,200		
	계약자부담액(B-A)	9,366	2,639	422	472	323	1,019	4,492	1,000	8,366
059.9900 A	기본공사비(A)	63,583	18,196	3,153	3,541	4,463	6,812	27,419		
	확장공사비(B)	73,297	21,466	3,468	3,892	4,867	7,575	32,030		
	계약자부담액(B-A)	9,714	3,270	315	350	404	763	4,611	1,000	8,714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관리사무소 문의)
- 본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3.10.24(화)부터 '23.12.22(금)입니다.(변동시 별도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의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잔금완납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기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무주택]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일 [2023.09.25(월)] 이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공급신청자 및 1~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여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산정 기준

- 무주택여부 산정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주택소유여부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I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도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됨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기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청약시 예비신혼부부 외 추가로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제출-주민등록세대 구성원-신청당시 신청서상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으로 기재된 등본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동호추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기장A2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동·호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전매제한

- (전매제한 해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공고기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 (~'20.12.23.) 되었으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전에 해당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 시에도 별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알려드립니다' 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 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 동일세대 내에서 1인이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3.9.15(금) 10:00 ~ 16: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LH청약플러스)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공동인증서 미발급 등의 사유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09.15(금) 오후 6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접수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 선택 → 주택형선택 → 신청유형(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2023.09.15(금) 10:00 ~ 16: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계약 대상을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대상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계약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선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II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등

1. 추첨(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3년09월25일(월) 11:0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추첨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LH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연락처: 051-460-5457,)로 2023.09.22(금) 15시까지 추첨참관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5명 이내)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계약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접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당첨자)
'23.09.25(월) 16:00 이후	'23.10.12(목) (10:00 ~ 16:00)	'23.10.24(화) (10:00~16:00)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모바일앱(어플리케이션명 : LH청약플러스)	접수처 추후 안내	나부산울산지역본부 (주소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신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기간(2023.10.12)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관
(1)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본인 /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센터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센터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공시에 첨부된 해당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LH청약 플러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포함)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주민센터
	해당자 예비배우자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주민센터
(7)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해당자	본인,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해당 병원
(8)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
(9)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접수장소

(10)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민센터
(11)	예비신혼부부확인서	해당자	본인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한 자로, 혼인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공시에서 제공하는 양식)	LH청약 플러스

■ 대리인 서류제출 시 추가 제출서류

구 분	추가 구비서류	
제3자 대리인 당첨자 서류제출 시 (배우자 포함)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위 '당첨자 제출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도장 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본인(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① 본인(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②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 자필 서명 필수)
	③ 본인(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③ 본인(당첨자)서명사실확인서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6) 이후 발급문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주택공급금액 계약금(주택가격의 10%) + 발코니확장 계약금(1,000천원) (+ 세대별 설치된 선택품목의 경우 상기 계약금 해당금액)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포함)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문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펌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문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후 주택소유여부 전신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해제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및 현장여건은 최초모집공고문(2019.11.29)을 참조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선택옵션 금액 포함)의 10퍼센트]
- 지정일(당첨자 동호개방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당첨동호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해당단지는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본단지는 기입주 완료된 단지로, 본공급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23.10.24.부터 23.12.22까지**이며(법정기간 60일),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선택가입 대상자) 전용대출상품 가입 시 주택도시기금 응자금을 동시에 수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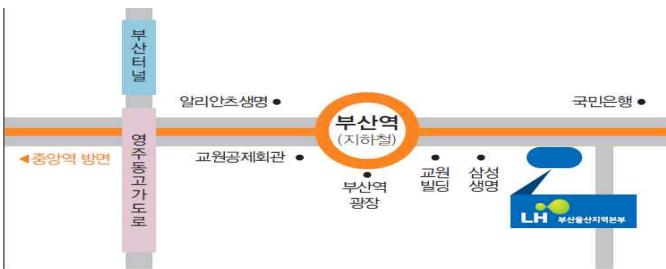
3. 기타사항

- 지구 및 단지 외부 내부 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일반사항은 최초공고문(2019.11.29) 참조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 목록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은 최초공고문(2019.11.29) 참조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2	한국토지주택공사 (605-82-11744)	금호산업(주) (104-81-3130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5. 접수 및 문의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부	
	<p>■ 위치안내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3층 판매부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오시는 길 (지하철) 부산역 10번 출구에서 초량쪽 방면으로 직진 (버스) (급행) 1003, 1001, (일반) 40, 26, 61, 66, 67, 5-1, 17 등</p> <p>문의처</p> <p>■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p> <p>■ LH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p>



부 산 울 산 지 역 본부